##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3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4.

발 의 자 : 이 용 · 주호영 · 신원식

김형동 · 장제원 · 김성원

배준영 • 김승수 • 배현진

서정숙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함)을 수립·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.

그런데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등의 문화관 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바둑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중 "수립"을 "5년마다 수립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	제5조(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
•시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	•시행 등) ①
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	
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	
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	
다)을 <u>수립</u> ·시행하여야 한다.	<u>5년마다 수립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